

의안번호	2126678
의 퇴 인	장혜영의원
회 답 일	2023.11..
추계번호	23D4676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사실조회)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8조제3항 (가정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첨부한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8조제4항 (가정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문을 실시하는 경우 심문의 전부를 녹음 또는 속기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사실조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제3항 (가정법원의 심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8조제4항 (가정법원의 심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사실조회(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른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 및 결정 등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안 제13조)¹⁾, 가정법원의 사실조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²⁾에 따라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나, 같은 법 제30조³⁾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替當)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
- 다만, 성별의 법적 인정사건의 접수 건수, 성별의 법적 인정사건 진행 중 재판부의 사실조회 예상 건수는 알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사실조회 시 소요될 비용 추계는 어려움

나. 진료기록 감정 촉탁(안 제8조제3항)

- 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첨부한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 촉탁서 송부 비용과 감정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비송사건절차법」 준용규정 및 국고에 의한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성별의 법적 인정사건의 접수 건수, 성별의 법적 인정사건 진행 중 재판부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예상 건수는 알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시 소요될 비용 추계는 어려움

1) 제정안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 및 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법원의 심리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3)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부담)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替當)하여야 한다.

다. 심문의 녹음 또는 속기 조서 작성(안 제8조제4항)

- 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심문 실시하는 경우 심문의 전부를 녹음 또는 속기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성별의 법적 인정사건의 접수 건수 및 가정법원이 할 수 있는 신청인 심문 예상 건수는 알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속기 또는 녹음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될 비용 추계는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